

기독교영성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“기독교영성연구소(Christian Spirituality Institute)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기독교 영성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국내·외 관련 신학계와의 학문 교류에 힘쓰고, 영성과 교회와 신학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한국교회의 영성과 영성신학 발전에 유익한 주제의 연구 발표, 자료 수집과 발간 사업
 1. 연구발표(세미나)
 2. 본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물과 국내·외 미발표된 논물들을 발굴 출판 및 학술지 발행
 3. 각 대학(원)의 기독교 영성에 관한 도서, 교재 편찬 사업
- ② 한국교회의 영성과 영성신학에 관한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와 홈페이지 구축
- ③ 일반 학문 및 타 종교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한 각 학문적 영성 연구 수행
- ④ 영성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타 신학 교육기관 및 영성연구단체들과의 연계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
- ⑤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
- ⑥ 외국의 관련 분야,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영성 연구와 수련의 확대

제 2 장 기구

제4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 명
3. 연구위원 약간 명
4.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 약간 명
5. 간사 1인
6. 행정조교 약간 명

제5조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제6조 (임기) 본 연구소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- 제7조 (직무)**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.
- ②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.
- ③ 간사와 조교는 소장의 지도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

- 제8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**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.
- 제9조 (임명)**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0조 (의결)**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1조 (연구위원회의 직무)**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- ① 기독교 연구의 영성과 출판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.
- ② 연구위원은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8명 이내로 하며, 운영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.
- ④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영성 전문 서적 등의 편집을 담당한다.

제 4 장 회원

- 제12조 (자격)** 본 연구소의 회원은 기독교 영성 및 관련 분야에서 석사이상 또는 목사, 선교사(준회원) 그리고 박사이상(정회원)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공감하고, 회칙을 준수하며 본 연구소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집회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,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제13조 (권리)**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활동에 참여할 권리,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투고와 학술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제14조 (회원의 종류)**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있고,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- 제15조 (회원의 제명)**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 제명일로 한다.
- ①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회원

- ② 본 연구소의 정해진 연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납부하지 않은 회원
- ③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회원

제 5 장 재 정

제16조 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
- 2. 외부의 연구 지원비
- 3. 회부의 연구소 후원비
- 4. 회비
- 5. 기타

제17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8조 (승인)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- ①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- ③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